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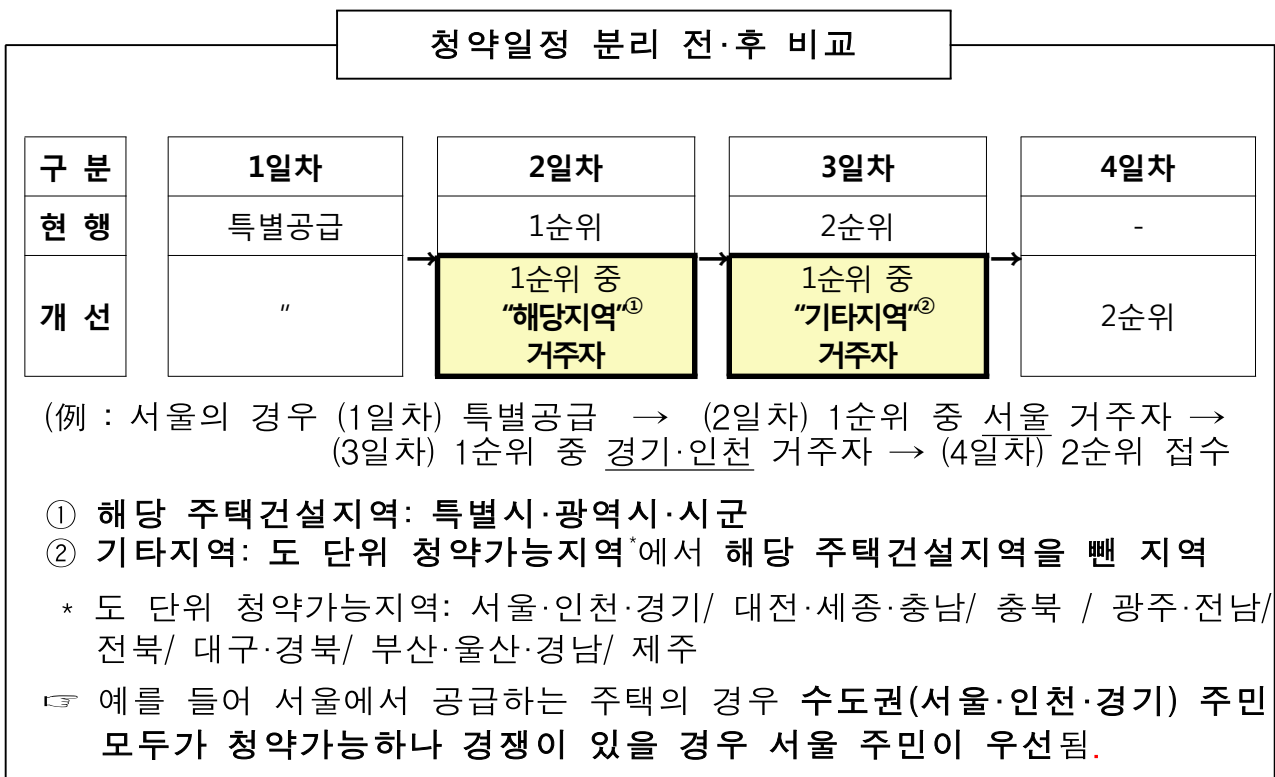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	보 도 자 료		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	배포 일시	2016. 11. 29.(화) 총 3매(본문 2, 붙임 1)	
	담당부서	• 주택기금과장 김홍목, 사무관 유종우, 주무관 김길중 (☎ 044-201-3351, 3343)	
2016년 11월 30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30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	

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, 2일로 분리...해당지역 우선 조정대상지역, 1일차(해당지역) 1순위 마감 시 2일차(기타지역) 접수 못해

- 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「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」 후속조치로 “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” 방안을 12월 1일(목)부터 시행한다.
-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○ 현재는 해당·기타지역*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에 접수하고 있으나,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(조정대상주택, 붙임 참조)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,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.

* 서울의 경우,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, 경기·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함.

○ '16. 12. 1.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
○ 다만,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.

* 예시: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% 배정,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%, 경기도 20%, 기타 수도권 50%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.

붙임: 조정대상지역(조정대상주택) 1부. 끝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(☎ 044-201-3351/33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조정대상지역**(조정대상주택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3)

청약 조정대상지역		청약 조정대상주택
서울특별시		모든 주택
경기도	과천시 및 성남시	모든 주택
	고양시·남양주시·하남시 및 화성시(반송동·석우동, 동탄면 금곡리·목리·방교리·산척리·송리·신리·영천리·오산리·장지리·중리·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)	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
부산광역시	해운대구·연제구·동래구·남구 및 수영구	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
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		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